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0. 4.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조)

나.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농촌유학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기능·운영 등(안 제7~1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4.~10. 10.(7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담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및 관리운영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학교의 실정과 유학시설 수요의 적합성
2. 지역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
3. 농촌유학 시설 운영의 지속성
4. 군민(지역주민)의 인식 및 협조

제5조(농촌유학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담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과장,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담당과장, 주택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유학 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조직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